

정 관

익산시중앙시장상인회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회 원	-----	2
제 3 장	임 원	-----	3
제 4 장	대의원구성	-----	5
제 5 장	대의원총회	-----	5
제 6 장	이 사 회	-----	7
제 7 장	재 정	-----	8
제 8 장	업무집행	-----	9
제 9 장	해 산	-----	10

익산시 중앙시장 상인회 정관

제 정 2005 .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익산시 중앙시장 상인회는 중앙시장 점포주 및 영업을 하는자로 조직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유통 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는 익산시 중앙시장 상인회라 한다.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 137-1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의종류) 본회는 회원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① 시장의 현대화
- ② 시장의 번영과 상인의 상권 보호 및 기술의 제공
- ③ 상품의 공동 구입 또는 공동판매 등 알선에 관한 사업
- ④ 상업 자금의 융자 알선
- ⑤ 경조 및 재해에 대한 공제 업무
- ⑥ 시장의 운영 관리
- ⑦ 기타 전각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고지방법) 본 회의 고지는 본회 게시판 및 전라북도 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최고는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도 불구하고 회원부에 기재된 회원이 운영하는 시장 내의 점포로 한다.

제7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익산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익산시 중앙시장에서 점포주 및 영업을 하는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책임) 회원은 관리운영비를 납부하고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비를 부담하여 정관을 비롯한 모든 규정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제명) ①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기타 본회에 대한 재반의무를 태만히 할 때
2.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휴업을 할 때
4. 회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현저히 위반할 때
5. 정관 또는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로 회의신용을 상실케 할 때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회원에 대하여 제명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일정한 기간을 청하여 그 기간내에 시정하거나 의무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보유하는 모든권리의 행사와 이의의 공여를 중단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본회의 임원으로 회원중에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이사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임의 방법) ①임원 선임 방법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 총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 부회장 이사 감사 출마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상무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임원의 보결선거 방법은 전항과 같다. 단 잔여임기 3개월 미만 일때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개선) ①임원은 대의원은 2분지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기중이라도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회장, 부회장, 이사 , 감사의 전원에게 대하여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개선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대의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일 5일전까지 당해 임원에 대하여 그 서면을 송부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 및 개선 또는 임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4조(임원의임기) ①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익산시장승인 2000. 5. 12)

②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직무) ①회장은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를 대표한다.

②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제16조(감사의직무) 감사는 매 사업년도 1회이상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실비변상) 회의임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에 대한 여비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원의임무) ①본회의 임원은 법령 감독 관청의 처분과 법령 정관 규약규정과 대의원 총회를 결의에 준수하고 본회의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에 대하여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대의원) 이 영업을 하면서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임원(대의원)에서 해임한다.

(2005년 4 . 12 대의원 총회 결의 익산시장 승인)

제 4 장 대의원의 구성

제19조(대의원구성) 중앙시장 상인회의 발전과 운영의 합리화 목적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회원들의 편리 도모 봉사함을 목적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①대의원은 회원이면 누구나(남,녀)자격이 된다.

②대의원은 작업종을 고려하여 전회원의 20명이상과 3분지 1 이내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공고 등록기간에 남, 녀 구별없이 누구나 총회원의 3분지 1 범위내에서 인원을 등록 접수 순에 따라 대의원으로 결정 구성된다.

(단, 점포등기권을 소지한 회원 1가족 1인에 한함)

제20조(대의원임무) ①전회원을 대표하며 번영회의 운영 전 사항을 총회를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다.

②대의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부회장 ,이사 , 감사가 출마에 등록을 하지 않을시는 이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21조(대의원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로 하며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분의1이상이 서명날인 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감사의총회소집)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의 직무를 행할자가 없을 때
2.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3. 감사가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대의원총회개최통고) 총회는 그 계획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6조(대의원총회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허가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3. 감사의 보고서 승인
4.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 결산의 보고 및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대의원총회의개회와결정측수)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하여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8조(대의원총회특별의결)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다수로서 의결한다.

1. 회의해산
2. 회의합병

제29조(의결권의대리) ①대의원은 인원의 선임과 개선에 직계가 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작성)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하고 감사는 의결권이 없이 출석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이사회는 출석임원과 대의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32조(이사회결의사항) ①본회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가격심사
2. 사업의 계획과 변경
3. 기채의 상황

4. 대의원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7 장 재정

제33조(입회금)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특별회비) 회원은 제4조에 각항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제35조(회비부담) ①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 1항의 회비의 지불에 관하여 기타 채권과 상계로서 회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부과금액 징수시기나 징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적립금) 회의때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적립한다.

1. 적립금은 잉여금의 10분의 3이상

2. 특별적립금 약간

3. 임원상여금 약간

제37조(적립금의처리) 적립금은 결손의 보전 및 시장의 시설개선(시장현대화)에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재규정의승인)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을 재정하여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업무집행

제39조(회의록작성및보고)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대의원 회의때 마다 작성하고 회의종료후 일주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의회의록은 제외)

제40조(사업년도) 회의사업년도는 익산시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1조(예산) 회장은 매사업년도초 해당년도의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항과 함께 이를 대의원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규약규정) 다음사항은 민법 및 이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1. 회의 이사회에 관한사항
2. 업무의 집행과 경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에 관한 사항
7. 회비의 부과금액 부과 방법등에 관한 규정
8. 기타 정관에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직원채용) 회의사업상 필요할 때에는 유급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44조(청산인) 회가 해산할시에는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5조(재산처리) 해산할 경우에는 회의채무를 완재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에게 배당한다.

제46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대의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감독관청이 해산을 명하였을 때
3. 파산이 되었을 때